

기소장 초안 (2000.8.28)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

원고: 남북공동 검사단

피고: 일본천황 히로히토 외 다수;

일본과 다른 국가들의 정부¹⁾

1) The Prosecution Team of Korea Against Japanese Emperor Hirohito and Other Individuals &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Against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Other States.

남북공동 검사단은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 헌장 제11조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의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다:

피고인 일본천황 히로히토와 아래에 열거된 그 외 개인들은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아시아·태평양의 여러지역에 이른바 군'위안소'를 입안, 설치하고 운영하여 수십만의 조선여성들을 이른바 '위안부'로 강제로 동원하고 아래에 적시한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폭력, 상해, 신체절단, 고문, 감금, 살해와 기타 비인간적이고 잔학한 대우 등의 행위를 자행하여 성노예로 빠뜨린 행위를 명령, 고무·선동하고 지원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가하여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헌장 제2조 1항의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남북공동 검사단은 또한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이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

- (1) 일본정부는 국제법에 위반한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무엇보다 사죄,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배상을 할 의무를 진다.
- (2) 다른 국가들의 정부들도 또한 일본군성노예제도와 관련한 국제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이들의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남북공동 검사단이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다.(추가 정리 필요)

일본천황 히로히토(裕仁, 1926-1989.1)

하타 순로쿠 (畑俊六對象): 1941년 3월부터 44년 11월까지 상급부대인 지나파견군의 사령관

데라우치 히사이치(寺內壽一): 1941년 11월부터 종전까지 남방총군 사령관 (라바울 참조)

우메즈 요시지로 (梅津美治郎): 1939년 9월부터 1944년 7월까지 관동군사령관, 대장

야마다 오쓰조 (山田乙三): 위 관동군 사령관의 후임, 대장

버마의 경우

조선군사령부 - 버마행 조선인'위안부' 동원에 관여

총독부 1937-39년까지 도항관련부분. 미나미(南次郎) 총독

목차

들어가며

제1부 개인의 형사책임

I. 배경: 일본의 조선지배체제

II. 범죄 - 일본군성노예제

1. 일본군'위안소'제도의 기획과 실시

(1) 일본군'위안소' 정책의 수립

1) 일본군과 육군성의 군'위안소' 정책

(가) 각 파견군의 설립지시

(나) 육군성의 직접지시

(다) 육군성의 군'위안소' 사전 계획

(라) 육군성의 총체적 기획

2) 다른 일본 정부기관의 참여: 외무성, 내무성

3)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의 협조

(2) 군'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1) 군'위안소'의 체제

2) 군'위안소'의 설치 개황

(가) 시작단계: 군에서 직접 설립·경영

(나) 민간의 대대적 진출

(다) 후기: 다시 군의 직접 설립

(라) 패전 직전의 시기: 혼란

3) '위안소'의 구체적 형태와 규모

4) '위안소'의 이용과 관리

(가) 사용자와 관리자

(나) 위안소 규정

(다) 감독·단속

(3) 소결

2. 조선인'위안부'의 강제동원

(1)

(3) 조선인'위안부'의 강제동원의 범죄성

1) '강제동원'의 정의

1) 조선에서의 노동력 동원과 '위안부' 동원

2) 조선인'위안부'의 동원경로

3) 강제동원의 방법

(가) 사기

(나) 납치

(다) 인신매매

(라) 강간, 상해

(마) 기타 범죄: 다diaspora(diaspora), 가족파괴

(5) 소결

3. 조선인'위안부'의 이송과 일본정부, 군부, 식민당국의 관여 - 추방(deportation)

(1) 도항에 대한 일본의 국가통제체제의 확립

(2) 군'위안부' 수송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상해파견군 육군'위안소'의 설치과정

2) 남지파견군 군'위안소'의 설치과정

3) 아마노(天野)부대의 군'위안소' 개설과정

4) 1940년 5월 7일의 '위안부'의 도항에 관한 각의결정

5) 비마 군'위안소'의 경우

(3) 도항 중의 군'위안부'의 노예적 상태와 이들에 대한 범죄

(4) 소결

4. '위안소'에서 자행된 범죄

(1) 조직적 강간

1) 강간의 성격

2) 강간체제

3) 강간의 반복성

(2) 노예화

(3) 폭행, 상해 및 고문

(4) 생식기 파손과 성병

(5) 강제임신, 인공유산과 유아살해

(6) 불임수술

- (7) 살해
- (8) 강제결혼
- (9) 기타: 아편주입 (약물투여)

5. 패전 직후에 자행된 범죄

- (1) 전장에서의 유기
- (2) 살해
- (3) 학살(mass killing)
- (4) 한인'위안부'에 관한 증거인멸

6. 일본군성노예 범죄의 부인, 은폐, 왜곡

III. 일본군성노예 피해여성의 고통

1. 직접적인 피해

- (1) 일본군성노예로부터 직접적으로 야기된 육체적 고통
- (2) 정신적 고통: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 1) 심리평가 진행 일정
 - 2) 심리검사 도구와 분석 방법
 - 3) 심리검사 분석결과
 - 4)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

2. 귀국후에도 계속되는 고통: 50년간의 침묵

- (1) 성노예 생존자들의 귀국후 상황
 - 1) 고향으로부터의 단절
 - 2) 가족연결망의 단절
 - 3) 생존조차 어려운 생활환경
 - 4) 정상적 여성으로서의 삶 불가능

(2) 후유증

- 1) 초기: 기억하나 침묵
- 2) 장기적 후유증: 침묵과 집합기억의 상실
- 3) 침묵에서 오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나?

(3) 침묵: 왜 그토록 말하기 어려웠나?

- 1) 생활환경의 요인: 가족관계 단절, 어려운 생활환경
- 2) 문화적 요인: 정절 이데올로기

- 3) 언어적 요인: 정체성 혼란과 인설화의 어려움
- (4) 침묵에서 증언으로: 어떻게 말하게 되었는가?
 - 1) 신고의 계기
 - 2) 증언동기 및 과정
 - 3) 여건을 마련한 배경요인: 정대협 의 역할과 지원법 제정
 - (가) 정대협 결성 및 활동: 법적 투쟁과 담론 확산
 - (나)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위안부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제정

과 시행

- (5)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후유증
 - 1) 신고 및 증언 이후의 생활: 나아진 생활환경
 - 2) 말하기, 기억회복과 새로운 후유증
- (6) 소결

IV. 법 적용

1. 인도에 반하는 죄

- (1) 추방
- (2) 강간
- (3) 고문
- (4) 노예화
- (5) 기타 비인간적 행위
- (6) 살해
- (7) 몰살/말살
- (8) 박해
- (9) 집단학살죄의 구성여부

2. 전쟁범죄

- (1) 한국에 국제인도법 적용의 근거: 일본의 한국지배의 성격
- (2) 국제인도법의 적용
- (3. 가능한 법적 항변의 검토와 배제)

V. 결론

(기소내용 요약)

제2부 국가책임

I. 사실의 주장

II. 일본의 국제법상의 책임

1. 국가책임의 부인

2. 적용국제법규와 일본의 국제책임

- (1) 국제책임 성립의 일반적인 요건과 일본의 국가책임
- (2)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관한 국제법 위반
- (3)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법 위반
- (4) 강제노동금지협약의 위반
- (5)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한 국제형사법 위반
- (6) 국제인도법의 위반

3. 일본의 국가책임의 내용과 해제방법

- (1) 사죄
- (2) 진상규명
- (3) 원상회복 - 명예회복, 생존자 본국송환, 유골송환
- (4) 기념관, 박물관, 문서보관소의 설치문제
- (5) 손해배상
 - (가) 한일청구권협정
 - (나) 일본소송
- (6) 처벌

III. 다른 국가들의 책임

1. 불처벌을 방지할 의무

- (1) 연합군의 전범처리정책과 일본군 전쟁범죄의 처리
- (2) 각국의 처벌을 위한 노력과 한계

2.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

3. 피해자의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

결론

부록

들어가며

[본 법정이 설립되기까지의 경과, 재판권의 근거, 죽은 사람에 대한 소추 문제, 결석재판과 피고의 방어권 문제와 같은 문제는 국제검사단의 기소장에 언급되어야 하지만 한국기소장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음. 당시의 국제법에 따른 재판이라는 점과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룬다는 점을 간단히 설명, 계속되는 불처벌 강조. 이러한 사항들은 9월 대만회의에서 각국 검사단과 국제검사단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본 법정은 피해자들이 세운 법정이라는 점에서 지식인들이 주축이 된 러셀법정과는 다르다는 점에 대한 공동인식이 필요함]

용어문제로 널리 사용되는 '위안부'(慰安婦)는 당시 일본 군부가 사용한 일본어 '이안후'(いあんふ)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comfort women'으로 번역된다.²⁾ 일본어로 '위안부'란 군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성행위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여성들을 뜻하는 것³⁾으로 아래에서 논증하는 것과 같은 '성노예'(sexual slaves)로서의 실상을 은폐하는 모욕적이고 완곡한 표현에 불과하다. 일본제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사기, 납치 등 강제인 방법에 의해 동원된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간당하고 노예적 생활이 강제된 장소를 '위안소'(慰安所, comfort stations)로 부르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있으며 맥두갈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지적하다시피 실상은 '강간수용소'(rape center)였다.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기소장에서는 통례에 따라 '위안부', '위안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인용부호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맥락에 따라 '성노예(제)'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기로 한다. 군'위안부'라는 명칭은 나중에 자세히 검토하는 바와 같이 일

2) 연합군의 문서에는 이를 가리키기 위해 'prostitutes'(창부, 매춘부)라는 용어도 발견되나 이것은 당시 번역과 통역을 위해 사용되었던 사전에 '위안부'를 그렇게 지칭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선주, 또한 당시 이들은 영어의 매춘부를 의미하는 p자에서 따온 'प्'로도 불리었는데 이는 '천황의 군대 하사품'이라는 뜻을 아울러 가진다. 더욱이 중국어로 'प्'는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찍이 만주지방의 일본 매춘부를 비롯, 위안부 여성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가 비속할 뿐만 아니라 실상을 가리고 왜곡하는 표현이므로 적합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신영숙·조혜란, 224.

3) 김원,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로서의 일본 중군위안부 제도 - 동경군사재판소에서의 기소 실패를 중심으로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5 제5호, 83, 84쪽.

4) McDougall's final report, annex, para. 1. [Gay J. McDougall,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UN Doc. E/CN.4/Sub.2/1998/13, 22 June 1998 (조시현 옮김, '맥두갈 보고서: 무력충돌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와 노예제나 다름없는 관행 (1)',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10월호 (통권 제24호), 63쪽과 '맥두갈 보고서(2):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설치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 같은 잡지, 98년 11·12월호 (통권 제25호), 83쪽.]

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의 일환으로 징발된 여성노동력을 뜻하는 '정신대'(挺身隊) 또는 '여자근로정신대'의 개념과는 구별된다.⁵⁾

'종군(從軍)'위안부라는 표현은 일본 군인을 주체로 하여 붙인 명칭으로 일본군인들에게 '위안'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중의 고통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⁶⁾ 또한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군성노예제에 동원된 여성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특히 이들의 남한 또는 북한에서의 현재의 상태를 지칭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조선인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5) 일본의 전시동원체제와 정신대에 관하여는 후술 참조.

6) 강만길, 11-12쪽.

제1부 개인의 형사책임

I. 배경: 일본의 조선지배체제

1392년 개국한 조선은 19세기 중반 이후 각 방면에 걸쳐 근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1876년 일본의 강압으로 맺어진 강화도조약⁷⁾으로 굴욕적인 개항을 맞이한 이래 일본과 구미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1868년) 이후 한반도 침탈을 일관되게 획책하여왔다.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1910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지배한다는 병합조치를 취하였다.⁸⁾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강제편입한 일본은 통감부를 총독부로 전환하고, 총독을 현역 육해군 대장에서 임명하였다. 총독은 천황에게만 책임을 지는 일종의 전제군주로서 입법, 행정, 사법, 조선군 통수권을 장악한 절대권력의 소유자였다.

초기의 조선 지배체제는 무단통치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일제는 헌병을 각지에 배치하여 독립운동을 진압하고 ‘치안유지’를 위한 주축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러한 ‘무단통치’에 대한 조선인들의 저항이 1919년 3.1운동으로 표출되고 해외에서의 무장독립투쟁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유화적인 ‘문화통치’를 표방하게 되었다.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고 각종 회유정책을 통해 일본으로의 동화를 촉진하고 독립의지와 민족성을 약화하려고 했다.

1931년의 만주사변이후 일본의 대륙침략이 노골적으로 전개되면서 후방기지인 조선에 대해 한층 가혹한 지배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는 한마디로 전시강제동원과 민족말살이었다.

1936년에 부임한 미나미(南次郎) 총독은 ‘내선일체화’(內鮮一體化)를 내걸어 ‘무차별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라는 미명아래 대대적인 민족말살정책을 전개하여 모든 영역에서 ‘전통’과 ‘민족’을 해체시켜 나갔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폐성탈명(廢姓奪名; 이른바 創氏改名), 신사참배, 황궁요배, 조선어 사용금지, 조선역사 왜곡, 통혼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일제의 강점이후 조선은 일본경제에 종속되어 일본의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 상품시장으로 전락하였다. 일제의 식민지수탈체제가 강화되면서 농촌이 파탄되고 농민이

7) 조일수호조약, 출전? 구한말 조약집?

- 8) ‘併合의 詔書’(1910.8.29)에서 “영구히 韓國을 帝國에 併合하기로 하였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韓國併合에 關한 條約’(1910.8.29) 제1조에서도 “한국황제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 양여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 조약의 효력과 이 시기 대한제국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후술 참조.

대부분이었던 조선 민중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졌다.

일제의 총체적인 민족말살정책이 수행되는 가운데 대대적인 전시동원체제가 수립되었다.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령을 공포하여 언제라도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강제징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중국의 저항으로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1939년부터는 본격적인 전시동원이 이루어졌다.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동안 강제저축·조세징수·곡물·금속류 등의 현물징발로 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한편 조선인을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로서 인적 동원을 하여 전쟁에 희생시켰다. 예컨대 강제동원된 노동자의 경우 복잡한 동원체제와 일본의 자료 은닉 등으로 아직도 그 규모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1934년부터 1945년의 기간동안 조선내에서 약 4,870,000명이 동원되었고,⁹⁾ 약 1,519,000명이 일본 등지로 동원되었다.¹⁰⁾ 또한 154,907명의 군속이 동원되었다.¹¹⁾

일제는 1942년 5월 8일 각의에서 조선에도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1944년부터 시행하였다. 일제가 군인으로 끌고간 인원은 1945년 패전 당시 현역 군인만도 육군 186,980명, 해군 22,299명 합계 209,279명에 이를 정도였다.¹²⁾ 실제 군인, 군속, 노무자로 동원된 조선인의 숫자는 이러한 공식통계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일제하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일제는 호주제를 조선에 이식하여 전통적인 조선의 가족제도를 재편함으로써 호주를 매개로 한 가족에 대한 국가의 통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조선여성의 전통적인 재산상속권을 부정하고 법적인 행위능력을 박탈하였다. 일제는 철저하게 불평등한 지위에 놓인 조선여성에게 일제의 통치와 가부장적 사회체제에 순응하도록 요구하였고 특히 전시에는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노동자의 출산을 통해 전쟁 수행에 기여하도록 강제했다. 조선여성들은 급기야는 자신의 육체마저 전쟁의 도구로 폭력적으로 희생되어야 했다. (공창 문제 보충)

9)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通卷 第10冊 朝鮮編 9分冊 (1947), 71쪽.

10)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朝鮮人強制連行, 強制労働の記録』, 1974, 88쪽.

11) 日本公安調査廳, 『在日朝鮮人の概況』, 1953.

12) 日本公安調査廳, 『在日朝鮮人の概況』, 1953.